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 차례

1. 머리말
2. 사례
3. 쟁점 검토
4. 사례의 해결

이성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책임역

## 1. 머리말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축적된 분쟁조정사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하다 보니 더 이상 소개할 사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보험 관련 판례와 이론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관련 사례와 동 사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 및 분쟁조정신청행위의 의의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 2. 사례

甲은 침대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공장건물 및 그에 분산 수용된 기계,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乙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 보험계약 유지중 '94.10.23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乙보험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5.10.18 보험감독원에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95.11.8 乙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甲은 응소(소멸시효중단의 주장사실이 없었음)한 바 있고 '97.1.10 서울지방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인가?

## 3. 쟁점 검토

### 가. 서설

우리나라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약 동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sup>1)</sup>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로 보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사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쟁점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의 제도적 취지와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다.

#### 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취지 및 타 제도와의 관계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되었고, 준사법적 분쟁조정제도인 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간략히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다. 금융분쟁조정결정의 효력

##### (1) 법률의 규정 개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재판상 화해의 효력

###### (가) 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는 어떠한

〈표〉 조정 및 유사제도 비교

화 해		조 정	중 재	
재판 외 화해	재 판 상 화 해			
	제소 전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민731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지법단독판사에 화해신청을 하여 동판사의 주재하에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소송 계속중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전술함으로써 성립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당사자의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1)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4222판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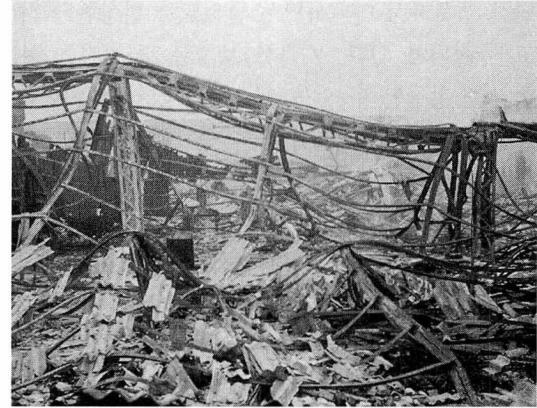
#### (나) 집행력과 형성력

조정안이 작성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결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조정결정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어 채무명의 즉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조정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조정결정서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형성력이 인정된다.

#### (다) 기판력

당사자가 수락한 화해조서(조정결정서)의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이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화해의 내용에 실체법상의 무효·취소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기판력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2)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68조에서 민법 제178조까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다.

#### (3)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 점에서 일단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유효하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는 소멸시효의 정지와는 구별된다.

#### (4)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거쳐분, 승인이 있다. 민법 이외의 중단사유로는 화의절차 참가, 회사정리절차 참가, 어음법·수표법상의 소송 고지 등이 있다.

#### (5)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금융분쟁조정신청

금융분쟁조정신청은 민법 제168조에 열거된

### 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의 의의

#### (1) 총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영구무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권리가 발생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신청행위도 이러한 중단사유의 일종이라 하겠다.

아래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중단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유인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해석<sup>2)</sup>도 마찬가지이다.

## 마. 상대방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와 시효 중단

### (1) 문제의 소재

제시된 사례를 보면 甲은 乙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응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소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2) 판례 및 학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판례는 피고의 응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효완성 주장자의 소 제기에 대하여 권리자가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최근의 판례<sup>3)</sup>가 있어 주목된다.

### (3) 소 결

응소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가치관에 따른 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sup>4)</sup> 그러나 오늘날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를 반드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시켜 해석하지 않는 등 이를 넓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점에 비추어 보면 권리의 존부가 소송물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응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sup>5)</sup>

2) 서울고등법원 1998.6.30 선고 98나98358판결

3) 대법원 92다47861 판결

4) 권오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사법행정

236, 44참조

5) 윤진수, 민법주해 500.

## 4. 사례의 해결

제시된 사례를 보면 보험사고가 '94.10.23.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96.10.23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5.10.18 보험감독원에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을 최고로 본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후 甲은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95.11.8. 보험회사가 甲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응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고로서 응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당사자가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그 당사자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甲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진다. Ⓣ